3-2	「재난안전법」을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분법 추진	행안부장관

□ 권고 내용

○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가진 법체계적·내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**재난안전법을 기본법인 '안전기본법'과 집행법인 '안전관리법' 및 '재난관리법'으로 분리**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.

□ 이행 현황

○ **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등 법령 체계 정비 연구**

※ '해외재난관리체계 조사·분석을 통한 재난안전법 법체계 개선 정책연구('22.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)' 및 '재난대응기관간 협력지원체계 구체화를 위한 법제연구('23.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)', 재난·안전관리 분야 법령체계 정비 연구('25. 한국공법학회) 등

○ **「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」**에 재난안전법 체계 개선과제를 세부과제로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 법령 정비

- **「재난안전 법제 정비 TF」 운영**, 소방·경찰·해경청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하위법령(사회재난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 인파사고 명시) 등 법률 24건, 시행령 11건 개정 완료

○ **안전관리 원칙과 기준 등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(6.2.)**과 연계하여 **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* 등 재난안전 분야 법체계 정비 추진**

* 안전기준(제3조제4의2호, 제34조의7) 및 안전지수·안전진단(제66조의10) 등이 「생명안전기본법」으로 통합됨에 따라 「재난안전법」의 중복 조문 삭제·이관 예정

□ 향후 계획

○ 재난안전분야 관계법령(재난안전법, 사회재난대책법 등) 정비(~'27.下)